

제국일본의 식민지 개발 구상과 군사주의: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

조정우**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또 하나의 식민지, 남양군도 | 통치의 변화 |
| II. 남양군도 위임통치와 준(準)국책회사, 남양흥발 | IV.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 계획과 실현 |
| III. 만주사변으로 인한 남양군도 위임 | V. 결론: 식민지 개발과 군사주의 |

| 논문요약 |

이 글은 일본의 위임통치 식민지였던 남양군도에서 활동한 남양척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임통치의 성격, 남양군도에 대한 통치방식을 먼저 검토하고, 그 후 1929년 세계대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개된 일본의 식민지 개발 사업의 하나로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남양군도의 정치군사적 중요성, 경제개발의 잠재력을 역설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1936년 7월 마침내 일본 정부는 칙령으로 그 설립을 승인하였고, 11월에 회사는 정식 출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양군도 개발계획과 남양척식회사 설립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제국국가의 식민지 개발정책에서 국책특수회사인 척식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개발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국책회사, 남진, 위임통치, 남양흥발, 차타드컴퍼니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A5B8066696).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I. 들어가며: 또 하나의 식민지, 남양군도

제국일본의 관도 안에 있던 대표적인 식민지로는 대만과 조선, ‘만주국’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곳으로는 이 주요 식민지 이외에도 관동주(關東洲)와 카라후토(樺太), 그리고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도 있었다. 이 세 지역은 그 지리적 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조선/한국과의 관계가 뚜렷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세 지역은 사실 일본제국주의사에서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역사와도 결코 무관한 곳이 아니었다.

요동반도의 관동주는 조선 식민화의 결정적 계기였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의 대한제국과 함께 일본제국의 수중으로 들어간 곳으로, 일본 최대의 특허식민회사였던 남만주철도회사(‘만철’)의 본거지이자 일본 군사파시즘을 이끈 관동군의 주둔지이기도 했다. 또 일본이 카라후토라 명명한 남부사할린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은 곳이었다. 즉 한반도, 요동반도, 남부사할린은 1905년 포츠머스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관도하에 들어간 곳으로 식민화라는 역사적 과정을 함께 겪게 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관점으로 보면, 조선·관동주·카라후토는 하나의 세트로 들어온 전리품이었던 것이다.

이 중 카라후토는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시대 ‘조선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카라후토의 산림과 광산 개발을 위해 막대한 수의 조선인들이 노무자로 징용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패전 후 귀환하지 못한 채 사할린 한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남양군도가 한국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도 바로 전시하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남양군도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남양군도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가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었다.¹⁾ 이러한 조사

연구 과정에서 남양군도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도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남양군도는 식민지하 조선인의 이동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학적 설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식민지배의 비교사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다.²⁾

남양군도는 제국일본의 영토 중 특이하게도 ‘위임통치령(mandate)’이었다. 법적으로 말하면 남양군도는 일본의 ‘공식 식민지’가 아니었고, 단지 원주민의 “복지와 개발”³⁾을 위해 국제연맹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 지역에 불과했던 것이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일본은 남양군도에 대한 위임통치 상황을 매년 국제연맹에 보고를 하여 심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즉 남양군도는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일본영토로 정식으로 편입된 공식 식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치는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조선과 남양군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는 대신, 1930년대 중엽에 벌어진 제도적 사건을 사례로 하여, 남양군도 연구⁴⁾와 식민지 조선 연구를 접목시키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1936년 11월 제국일본이 ‘남양군도’와 ‘외남양

-
- 1) 주요 연구로는 정혜경(2002; 2005; 2006)과 남경희(2005), 김도형(2006), 김명환(2008; 2009; 2010) 등의 연구가 있다.
 - 2) 남양군도 연구의 의의를 하나 더 덧붙이면, 조선인/한국인의 ‘남방’ 인식 문제가 있다. 이는 조선인의 인종주의 사고와 하위제국주의 욕망의 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동남아와 열대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상(像)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남방 판타지’로 분석한 것으로는 권명아의 연구(2005)가 있는데, 그는 주로 동남아에 대한 조선인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 3) 국제연맹 위임통치의 가장 큰 명분은 위임국이 대상지 주민에 대해 ‘복지’를 펼치고,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 4) 일본제국주의의 전개와 남태평양에 대한 해외학계의 연구는 야노 토오루의 책 『남진의 계보』(1975)와 마크 피티의 논문 “남양: 남태평양에서의 일본, 1885-1945”(1984)가 그 기초가 되었다. 야노의 연구는 일본의 메이지시대 남진론의 형성에서부터 남양지역 일본인의 사회사, 그리고 전시기의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여 제국일본의 남진 구상의 논리와 구조를 규명한 노작이다. 피티의 연구도 그 스스로 인정하듯이 야노의 남진론 연구에서 자극을 받아 진행된 것이다(Peattie 1984, 174-175). 피티는 일본제국과 남양군도의 역사적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양군도를 일본제국주의사 연구 및 태평양지역 연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부각시켰다.

(外南洋)’에 대한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국책특수회사로 ‘남양척식주식회사(南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남양척식주식회사(이하 ‘남양척식’으로 약칭)가 남양군도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 간단한 언명에는 숨겨져 있는 논점들이 있다. 먼저, 횡적인 축에 놓이는 논점인데, 남양척식이 설립된 1936년이라는 시점에는 남양척식과 유사한 사업목적의 가진 식민지 국책회사들이 잇달아 설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35년 12월의 만주척식주식회사(滿洲拓殖株式會社)의 설립을 필두로,⁵⁾ 1936년 9월에는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殖株式會社)가 설립되었고, 11월에는 대만척식주식회사(臺灣拓殖株式會社)와 남양척식이 거의 동시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는 남양척식의 설립을 남양군도 통치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제국일본의 광역경제권 건설 속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하나는 종적인 축의 논점으로, 남양군도에는 이미 남양흥발주식회사(南洋興發株式會社, 이하 ‘남양흥발’로 약칭)라는 ‘준(準)국책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남양흥발은 남양청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남양군도의 사탕수수 재배와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남양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제당기업으로, 남양군도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양군도의 산업은 이 남양흥발에 의해 개발되었고, 또 남양흥발에 의해 남양군도는 대만과 함께 설탕이라는 세계상품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비록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이지만, 식민지 개발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높고 정부친화적인 남양흥발이라는 회사—‘준국책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남양군도에는 남양척식이라는 대형 국책회사가 신설되었던 것일까?⁶⁾

5) 만주척식주식회사는 1937년 9월 일본-만주국 합작의 만주척식공사(滿洲拓殖公社)로 확대 개편되었다.

6) 대만의 경우는 남양군도와 같은 유형인데, 대만제당이라는 ‘준국책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역시 1936년에 국책회사 대만척식이 창립되었다. ‘준국책회사’는 久保文克(1997)가 대만제당회사와 대만척식회사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말이다. 그는 준국책회사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 정부와의 관계 등에서 국책회사와 동일하지만, 단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일반 상법에 의해 규정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점을 의문시하지 않고 두 회사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양립했다는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⁷⁾ 이 질문은 앞의 4개 척식회사 동시신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남양척식과 달리 조선총독부가 세운 선만척식회사는 기존의 준국책회사 동아권업(주)를 굳이 해산시켜 인수합병하여 탄생했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남양군도나 두 지역 공히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이지만 사업목적과 방식은 국책회사에 준했던 회사—즉 ‘준국책회사’가 1920년대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는데, 1930년대 중엽 조선은 준국책회사를 없앤 반면 남양군도에서는 국책회사와 준국책회사가 병존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은 남양척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제국일본의 남양군도 통치의 성격 변화와 관련하여 남양척식회사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1930년대 전반기 ‘제국경제권’의 구축 속에서 ‘식민지 개발’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대만의 대만제당과 남양군도의 남양홍발은 민간기업이면서 해당 식민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책적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책회사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다시 말해 근거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로 법률용어로는 ‘특수회사’라 하였다. 대체로 국책회사는 특수회사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제당과 남양홍발처럼 거의 국책회사나 다름없지만 다만 근거 법령이 없는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특수회사와 대비하여 이들을 준특수회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들은 관계 특수법령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수회사라는 법적 형태에 ‘준’한다고 할 수 없다. 이 회사들이 특수회사에 ‘준’한 것은 국책적 사업과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준국책회사라는 규정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 7) 사실 남양척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크 피티가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에 관한 독보적인 성과인 그의 책(1988)에서 2-3쪽을 할애해 남양척식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해 두었고, 일본에서는 今泉裕美子(2005)가 남양홍발과 남양척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둔 바가 있다. 김명환(2005)은 남양척식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를 규명하면서 남양척식을 간략히 다루었는데, 그 문제관심이 강제징용에 있었기 때문에 남양척식의 설립과정과 조직적 특징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Ⅱ. 남양군도 위임통치와 준(準)국책회사, 남양홍발

남양홍발(주)는 남양군도를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당시 일본 관계(官界)에서 자주 쓰이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남양홍발은 곧 남양군도였고 남양군도는 곧 남양홍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회사가 남양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비교불가한 것이었다. 남양청의 재정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은 ‘출항세’에 의해 충당되었는데, 이의 거의 대부분은 남양홍발의 제당상품 수출에서 나왔다. 이 출항세 납부금액은 남양청이 통치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커서, 남양청은 그 초과분을 ‘잉여금’으로 계속 축적해 두어야 할 정도였다.⁸⁾ 이처럼 제국일본의 남양군도 통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남양홍발이라는 준국책회사를 빼놓아서는 안된다. 남양홍발은 192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1922년 4월에 설치된 남양청보다 더 빠른 것이었다. 남양군도 통치기구인 남양청의 관제(官制)가 마련되기 전에 이미 남양홍발은 사업에 착수를 한 셈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시 일본군의 남양군도 점령에서부터 남양청 설치까지의 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산동-만주-남양군도: 토지상조권과 위임통치

남양군도는 일본군의 점령 이전에는 독일령이었다. 영토획득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던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서구열강 간의 전쟁이라는 호기가 몹시 탐나긴 했지만, 후발제국주의 국가로서 약체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던 일본이었기에 선불리 참전을 결행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일본에게 빌미를 준 것은 바로 영국이었다. 영국은 독일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8) 국제연맹 위임통치 규정 상, 위임통치령 내에서 발생한 재정수입은 그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잉여금을 일본본국으로 송금한 대만과 달리 남양군도는 이를 도내(島內)에 유보시켜 두었다.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독일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안이었다. 영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군사행동에 돌입하여,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산둥반도와 마이크로네시아(남양군도)를 점령하였다 (Peattie 1996, 73-75).

1914년 산둥과 남양군도를 점령한 일본은 점령 직후인 1915년 그 유명한 “對華21個條要求”를 발표하였다. 이는 산둥의 조차지를 일본에 할양하고, 청도-제남 간 철도 운영권을 일본에 부여하고, 또 ‘만몽(滿蒙)’지역에 대한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할 것 등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권리 일체를 일본이 보유하겠다는 대담한 요구였다. 이에 대해 아사다 교지는 일본이 실제로 의도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만주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었다고 지적하였다(淺田喬二 1973, 325-229). 즉 중국 측에서나 서구 열강 입장에서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산둥 영유권과 내정간섭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는 척하여 실제로 원하는 만주 토지소유권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림수는 남양군도에 대한 영국과 일본 간 체결된 밀약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은 일본군이 산둥과 남양군도의 독일군을 공격하는 대가로 바로 남양군도를 일본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我部政明 1982b, 68).⁹⁾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통해 얻으려고 한 것은 바로 만주 토지소유권과 남양군도 영유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주의 토지에 대해 일본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주장은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이라는 이름의, 소유권도 사용권도 아닌 형태로 귀착되었다(淺田喬二 1989, 183). 이 애매함은 후에 만주사변 발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아래에서 더 검토하겠는데, 남양군도에 대한 영유주장은 ‘위임통치령’이라는 반(半)식민지 혹은 준(準)식민지가 되는 형태로 관철되었다. 이처럼 만주와 산둥, 남양군도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먼 지역으로 보이지만, 일본제국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관련되

9) 佐伯康子(1992a)는 영국이 일본에 지중해로 함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남양군도의 일본 점령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았다. 일본의 남양군도 영유를 둘러싼 영국-일본 간의 협약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어 연동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베르사이유 강화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패전 책임을 물으면서 독일을 ‘전범(戰犯)’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이 ‘전범국’이라는 형사재판식 규정은 근대 국제관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던 포스트-베스트팔렌 체제하에서는 여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전쟁에서 진 국가는 그저 패전국이었을 뿐, 졌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까지 유럽국가 간 전쟁에서의 관례를 깨고, 독일은 범죄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령 식민지들은 이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승전국들에게 배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소련의 국제공산주의 이념과 그에 대응해서 미국이 내놓은 민족자결주의 이념에 의해 과거처럼 패전국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그대로 식민지로 접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더 이상 제국주의가 ‘문명화의 사명’과 같은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만방에 폭로하였다. 세계대전 후 어느 열강도 제국주의가 선(善)이라거나 향후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예전처럼 ‘식민지’라는 제국의 필수조건을 노골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었다. 피터 두스(1992)가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에서 말한 것은, 공식 제국주의가 수명을 다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은 공위기(空位期) 속에서, 승전 제국주의 국가들이 패전국인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구(舊)식민지를 영유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위임통치(mandate)’였다는 것이다.

2. 군정과 조선인 폭동, 남양흥발의 설립

일본군이 남양군도를 점령한 것은 1914년 9·10월로, 이후 일본해군은 남양청이 설치되는 1922년까지 만 8년간 남양군도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다.¹⁰⁾ 마크 피티는 한 일본해군 장교가 남양군도에 첫발을 내딛는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식민지적 조우(colonial encounter)의

10) 일본의 남양군도 위임통치는 1919년 6월 결정되었다. 일본해군은 이에 따라 민정 이양준비를 시작하였고, 1922년 4월 남양청이 설치되면서 남양군도에 대한 군정은 종료되었다.

주인공이 된 장교는 바로 일본 민속학의 태두인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의 동생 마쓰오카 시즈오(松岡靜雄) 소령이었다(Peattie 1988, 63).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마쓰오카도 형처럼 언어학과 민속학에 조예가 깊었다. 하지만 이 문화적 소양은 그저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 불과했는지, 일본해군의 남양군도 군정 통치는 실정(失政)을 거듭하였다. 이마이즈미의 연구(1992)에 따르면, 남양군도 농장의 일본인 농업노동자들은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섞여 들어왔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1919년에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¹¹⁾

일본군 점령 후 남양군도에는 소소한 상인회사 이외에도 니시무라척식(西村拓殖)과 남양식산(南洋殖産)이라는 대(大)농장회사도 진출하였다. 니시무라척식은 일본인의 남방 진출의 본거지 중 하나였던 나가사키의 어업가가 만든 회사로, 일본군 점령하의 남양군도에서 일본본토와 조선으로부터 값싸게 들여온 노동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또 하나의 기업은 조선에서의 농업경영 및 금융업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시부사와(澁澤)가문이 출연한 남양식산이었다. 시부사와 가문은 친인척으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시부사와 동족회(澁澤同族會)’를 지주회사(持株會社)로 하여 일본의 식민지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황해도와 경상도에서 조선 최대급 소작제 농장을 운영한 조선흥업(朝鮮興業)이었다. 조선흥업-경성제대 법학부 교수 오다카 토모(尾高朝雄)의 형인 오다카 쿠니오(尾高邦雄)가 사장¹²⁾-은 남양군도에도 조선과 같은 대농장이 운영가능하다 판단하여 1916년 자회사로 남양식산을 설립한 것이다.

전형적인 식민지 열대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조선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무더위와 음식,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조선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이민 브로커의 알선에 의한 계약 이민자들이 사실 반(半)노예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은 굶주림 때문이었다. 남양군도의 극심한 작황부진과 농

11) 이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경위로 이 시기에 남양군도에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밝혀낸 연구는 아직 없는데, 아마 일본인 이민회사의 알선에 의해 일본인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시부사와 가문과 오다카 가문은 혼맥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극도의 빈곤으로 빠져들었고, 조선으로 돌아갈 방도가 없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 외딴 섬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폭동의 진원지는 조선총업의 자회사인 남양식산 농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양군도 위임통치기관의 확정단계에 있던 일본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통치를 위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조선인 폭동은 자칫 일본의 의도를 좌절시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었다(今泉裕美子 1992). 이러한 국제관계의 특징상 남양군도의 일본군은 조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압도적 무력행사를 통해 가혹하게 진압을 할 수도 없었다. 남양군도 안에는 일본군의 통치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푸른 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양군도가 미국-팜-필리핀을 잇는 미해군의 해상 루트를 절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또 호주도 일본이 남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해군의 남양군도 점령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관찰하고 있었다(Peattie 1996, 75-79). 호주는 일본의 남양군도 영유가 마뜩치 않았지만, 영연방의 일원인 한 본국에서 체결한 밀약을 노골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다.¹³⁾

조선인의 폭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일본군정은 남양군도 통치 방식을 재검토해야만 했다. 특히 군정은 민간회사의 경영능력의 한계와 무책임성이 폭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군정에서는 기존 민간회사를 정리하고 ‘관민협력’에 충실할 신기업의 설립을 모색하여 “특수기업회사설립(特殊企業會社設立)”에 관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今泉裕美子 1992, 139-140).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남양홍발의 사장이 될 마쓰에 하루지(松江春次)였다. 화학을 공부했던 마쓰에는 식민지 대만에서의 제당산업의 눈부신 성공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었다. 대만의 준국책회사 대만제당(주)의 임원으로 일본제국의 주력 수출공산품 중 하나였던 제당품을 생산하는 데 참여했던 마쓰에는 대만제당에서 독립하여 자신만의 사업체를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던 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일

13) 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호주의 묵인은 1930년 말까지도 지속되었다(後藤乾一 2010, 132-141).

본이 점령하고 있던 남양군도였다.¹⁴⁾ 마쓰에는 남양군도의 기후와 식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당업을 하기에 충분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의 사업전략은 국책회사 설립을 통해 남양군도 통치를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던 해군의 관심을 끌었다.

군정의 허락을 받은 마쓰에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때 남양군도에 등장한 것이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약칭)이었다. 동척은 원래 ‘조선에서의 척식이민사업’을 특허로 받아 설립된 국책식민회사였지만, 1917년 그 ‘동척법’을 개정하여 사업지역을 ‘조선’에서 ‘본토 이외 해외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민’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영역을 ‘투자금융’으로까지 확장하였다. 해외·외지 투자금융기업으로 변신한 동척이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은 바로 일본이 ‘상조권’을 부여받은 만주에 대한 토지매수 작업이었다. 초대 조선총독이자, 동척법 개정 당시 일본총리대신이었던 테라우치가 동척을 식민지 투자금융회사로 적극적으로 변모시킨 것은 바로 동척의 자금으로 만주의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동척은 만주 토지매수 사업이라는 제국의 국책에 부응하면서도, 법 개정으로 사업 권역이 외지와 해외로까지 확대되자 동남아를 비롯한 ‘남방·남양’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마쓰에는 일본해군의 주선으로 동척 사장을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마침내 동척은 남양군도 제당업에 대규모 출자를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정에서는 조선인 폭동이 발생할 만큼 경영성적이 좋지 않았던 니시무라척식과 남양식산을 신회사가 인수토록 하였고, 그 결과 마쓰에를 사장으로 한 준국책회사 남양홍발(주)이 1921년 11월 설립되었다.¹⁵⁾

한편 만주의 일본인들은 중국 정부가 만몽지역에 대한 일본인의 토지상조권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농장회사 설립을 봉천영사관에 신청하였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들의 농장회사 설립 신청은 다분히 토지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인가하지 않았다.

14) 공교롭게도 대만에서부터 남양군도에 이르는 일본이 지배한 열도(列島)지대는 바로 제당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의 원산지였다.

15) 설립 당시 동척 남양홍발 전체 납입자본금의 49%를 출자한 남양홍발의 최대주주였다.

일본 정부는 만주의 토지 매수라는 극도로 예민한 문제를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보아,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기업에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민간회사들이 난립할 경우 토지상조권하에서 일본의 비밀스런 토지취득 행위가 들끓날지도 모르며, 또 명의위장을 통한 매입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정부자금을 착복·횡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봉천영사관을 통해 동척과 만철의 공동출자하고 조선총독부와 관동청이 관할하는 농업이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주에는 1921년 12월 준국책회사 동아권업(주)가 설립되었다(江夏由樹 2005, 45-48).

이로써 동척은 같은 시기에 북방의 만주와 남방의 남양군도에 준국책회사를 계열회사로 두게 되었다. 이는 동척의 투자 목적과 국책회사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책회사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사업부문이나 사업지역에 진출하여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동아권업회사와 남양홍발회사는 만주와 남양군도라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지역에 각기 설립되었지만, 민간회사의 난립을 정리한다는 동척의 목적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설립 후 남양홍발은 남양청의 각별한 관심과 동척이라는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의 존재, 그리고 마쓰에 사장의 사업 수완이 삼위일체를 이뤄 승승장구하였다. 남양홍발 덕택에 남양군도는 대만과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제당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저 남태평양의 열대지역으로만 알려져 있던 남양군도는 사탕수수의 세계적 산지가 되었고 남양홍발은 막대한 양의 제당제품을 세계 각지로 수출하였다. 남양홍발이 내는 출항세는 남양청 재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내(島内) 통치비용으로 쓰이고도 남을 정도였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1932년에 이르면 남양군도도 제당산업으로 재정독립을 이루었다(今泉裕美子 1994, 32). 그런데 대만은 남은 납세금을 일본본국으로 송금하였지만, 남양군도는 위임통치령 규정상 내부에서 발생한 수익을 그 외부로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양청은 그 자금을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보유하였다.

이렇게 남양군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얻은 전리품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다. 토착민은 인구 자체가 적었고, 또 각 섬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 이외에는 식민통치자들이 언제나 직면했던 민족주

의 운동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다.¹⁶⁾ 국제연맹은 1년에 한 번 위임통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요구했을 뿐 일본의 통치에 대해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¹⁷⁾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다 남양홍발에 의한 경제호황이 더해져 남양청의 식민관료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 당시 한 신문기사에서 표현했듯이, 남양군도는 '관료들의 천국'이었다. 남양홍발 사장 마쓰에 하루지는 '사탕왕(砂糖王)'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사이판의 '마쓰에공원'에는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남양청이 해야 할 일은 극심한 작황부진으로 피폐해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오키나와인들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었다. 이른바 '소철지옥'으로 표현된 1920년대 오키나와는 주력 생산품이었던 소철이 병충해로 전멸하다시피하면서 기근이 엄습하였다. 오키나와 농민들은 기근을 피해 남양군도로 몰려들었는데, 남양군도가 이들을 수용하면서 기근으로 폭발 위기에 있는 오키나와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¹⁸⁾ 남양홍발 입장에서 오키나와 이민자의 쇄도라는 상황은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니었다. 열대 농업에 익숙한 오키나와인들을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¹⁹⁾ 그래서인지 남양홍발은 1929년 세계대공황에도 주주 배당률을 1-2% 삭감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高木茂樹 2008, 32).

16) 남양군도에서의 일본인과 토착민, 그리고 오키나와인과 조선인 간에는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크 피티의 책 『植民地』(2013, 266-272)를 참조할 것.

17) 호주와 네덜란드는 일본이 남양군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였다.

18) 오키나와의 '소철지옥'에 대해서는 도미야마 이치로의 일련의 논의(2002; 2015)를 참조할 것.

19) 오키나와인의 남양군도 노동이민에 대해서는 今泉裕美子の 논문(1992)이 상세하다.

Ⅲ. 만주사변으로 인한 남양군도 위임통치의 변화

1. 국제연맹 탈퇴와 남진론의 대두

남양군도의 일본식민통치가 변화에 직면했던 것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였다. 일본의 만주 영유는 서구 열강의 양해를 얻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고, 만주는 양해를 해주기에는 그 경제적 규모에서나 지정학적 위치에서나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다. 일본이 단독으로 감행한 것이라 국제연맹이 '위임통치'로 승인해 줄 수도 없었고, 또 일본 스스로도 만주를 공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만주국'이라는 법적 독립국을 세워 일본제국의 위성국으로 삼는 방안이었다. 남양군도나 만주국이나 사실상의 식민지였던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만주국은 논공행상으로 나눠 가진 남양군도와는 상황이 달랐다. 결국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건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만주 문제를 둘러싼 이 급격한 정세변화는 바로 남쪽의 남양군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위임통치령이라는 국제연맹의 규약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일본의 남양군도 통치는 이뤄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스스로 그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가 국제연맹을 탈퇴했기 때문에 남양군도는 반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왔다.²⁰⁾ 대학교수들조차 이 질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위임통치의 성격을 지나치게 국제법적인 문제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피터 두스(1992)는 국제연맹 결성 시 다른 문제는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의 자문으로 주요 규약이 제정되었지만, 위임통치령 문제만은 오로지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정치가들에 의해 그 규약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위임통치령은 법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승전국 간 배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배분 방식을

20) 藤森清一郎·高山伊太郎·坂本丹治, “(極秘)南洋群島方策二關スル意見”, 1935. (『南洋群島開發調査會關係』 서류 수록 문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것이라 하였다. A형, B형, C형이라는 유형은 국제법적 성격 차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배분을 받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즉 C형의 경우 일본이 배분받아 통치하는 구역이라는 뜻으로, 그저 거기에 약간의 규제 규약을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음에도 또 그로 인한 남양군도 반환을 걱정했음에도, 국제연맹이 일본의 남양군도 위임통치는 계속 유효하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은 두스의 해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남양군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제연맹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이 식민지배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맹 입장에서는 비록 망신스럽긴 하지만, 위임통치령으로 계속 인정하게 되면 남양군도에서의 일본의 행동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만은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임통치령에는 일체의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남양군도를 군사시설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감시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남양군도는 특이한 이중구조에 놓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위임통치령이라는 법적 구조를 계속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의 구도 속에 명백한 식민지로서 편입된 것이다. 1930년대의 남양군도는 이 미묘한 구도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1933년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 북방의 변화가 대만과 남양군도를 중심으로 한 남방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해이다. 그 이듬해인 1934년 12월에 척무성과 남양청은 “남양군도의 통치와 개발에 관한 근본방책을 확립·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²¹⁾ 이는 1935년 10월에 설치되어 대만척식(주)의 설립을 결의했던 대만총독부의 ‘열대산업조사회’ 보다도 이른 시기에 설치된 것이었다. 물론 『대만일일신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5년 1월에 ‘대만산업조사회’, ‘열대산업조사회’, ‘남방경제조사회’, ‘대만경제개발조사회’ 등의 이름으로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만 산업개발에 관련한 조사심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왔다. 그런데

21) 拓務省, “(秘)南洋群島開發調査委員會設置ノ件”, 1934. 12. 6.

‘열대산업조사회’ 설치의 대만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일본제국 내부의 알력으로 인해 지연되어 35년 10월에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河原林直人 2011, 117).²²⁾ 이로 볼 때 식민지 개발 정책의 입안에 있어 굳이 자료기록으로 따진다면 남양군도 쪽이 빨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면의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어느 쪽이 선행했다고 보기보다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남양군도와 대만에 대한 개발 계획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던 것은 바로 척무성과 해군이었다. 1929년 설치된 척무성은 대만총독부, 남양청, 카라후토청에 대한 주무관서였다.²³⁾ 세계대공황의 발발이라는 미묘한 시기에 설립된 척무성은 식민지 종합 행정관리 기구로 설치되었지만, 각 식민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내무성, 외무성, 상공성 등 다른 부처들의 반발과 또 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애초의 설립 목적을 그다지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본제국의 최대 식민지인 만주국은 ‘대만사무국(對滿事務局)’을 통해 본국과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척무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위로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에서 척무성의 움직임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척무성은 만주사변 직후부터 계획된 조선과 일본본토에서의 만주농업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선인 만주이민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하고 있었고, 일본인 만주이민 사업에 대해서는 본토의 농림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힘없는’ 관청인 척무성에게 기회가 온 것은 바로 일본해군의 ‘남진(南進)’ 구상이었다. 일본의 ‘남진론’은 대단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대만 식민화 때 한차례 붐이 일어났다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량이 조선-만주 쪽, 즉 북진(北進)에 경사되면서 재야(在野)의 담론으로 머물고 있었다.²⁴⁾ 그럼에도 해군 내부에서는 남진론자들이 계속 한 축을 차지하고 있

22) 1935년 3월부터는 모두 ‘열대산업조사회’로 통일되었다고 한다(河原林直人 2011, 117-118).

23) 조선은 조선총독부가 일본육군의 아성이라는 점, 그리고 총독이 천황에 ‘직예’한다는 점 때문에 척무성의 영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식민지였다.

24) 일본 남진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矢野暢(1975)의 책을 참조할 것.

었는데 남양군도와의 조우 장면에 등장한 마쓰오카 시즈오도 남진론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일본해군은 1933년 9월 “海軍の對支時局處理方針”을 결정하여 그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남진론을 해군의 중심적인 정책구상에 위치시켰다(矢野暢 1975, 150). 여기에는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가 결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일본해군은 그간 워싱턴군축회담으로 묶여 있던 군비를 마침내 확장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대미항전력(對美抗戰力)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군항을 확보하고 보급로를 유지해야 했고, 또 군수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남양군도를 기축으로 한 남방 국방권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해군은 척무성의 남양군도 및 대만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남양척식회사 설립이 임박한 1936년 8월에 이르러 이른바 “국책의 기준”을 발표하여 남진을 제국일본의 주요 국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켰다.

일본해군이 위의 “對支시국처리방침”에서 남진을 해군 정책의 핵심 목표로 천명한 이후, 척무성의 움직임은 특히 남진의 거점인 대만과 남양군도를 중심으로 적극화되었다. 1934년 12월의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설치는 그것의 첫 번째 제도적 표현이었다.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이 섬[남양군도]이 제국의 국방상 그 지위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일본]의 대(對)남방정책 수행상 유력한 거점으로 특수한 사명을 가지게 됨에 따라 통치와 개발상 근본방책을 검토하여 그로서 시설의 정비경영의 개설”을 조사·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남양군도는 일본제국의 국방과 대남방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통치·개발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시설을 정비·경영하기 위해 먼저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로 약칭)를 설치했다는 것이다.²⁵⁾ 이는 남양군도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해군의 남진 정책에 수반하여 남양군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위원장은 척무대신이 맡았으며, 위원은 ‘정부 측’에서는 척무성 6명, 외무성 2명, 대장성 2명, 해군성 3명, 남양청 1명으로, ‘학식유경험자’로는 동

25) 拓務省, “(秘)南洋群島開發調査委員會設置ノ件: ‘理由’”, 1934. 12. 6.

척·남양홍발·일본우선(日本郵船)·남양협회에서 대표자 각 1명씩으로 선발되어, 위원장 포함 총 19인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진인 간사는 척무성 4명, 해군성 1명, 남양청 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척무성 중심으로 진용이 짜여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해군성에서도 2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남양군도개발 계획에 대한 해군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²⁶⁾ 또 ‘학식유경험자’ 위원들은 남양군도 개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친(親)정부적 기업·단체의 임원들이었는데, 그중 남양홍발에서는 마쓰에 하루지 사장이 직접 참석하였다.

2. 남양군도 개발 구상: 인구와 영토의 문제

조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①일본의 남방정책에 있어 남양군도의 사명, ②남양군도 도민(島民) 통치정책, ③남양군도의 국방·행정, ④산업개발 정책, ⑤이식민의 발전 방안, ⑥교통·통신의 개선 방안, ⑦척식실행기관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한 정책 등이었다(拓務省 1934, 34). 조사회의 논의 사항은 1930년대 남양군도 개발사업이 갖는 성격과 그 개발사업 속에서 남양척식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개발계획의 핵심과제는 남태평양 국방의 거점으로 ‘남양군도와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먼저 도내(島內) 통치의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원시상태 도민(島民)의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구관(舊慣)을 존중해 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도민의 내지(內地) 견학을 추진하여 선진 일본의 문명을 직접 체험토록 하며, 또 일부 도민을 “유식계급”으로 육성하여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토록 하며, 적절한 요건을 채운 자들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²⁷⁾

26) 외무성 위원 2인은 남양군도가 여전히 위임통치령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와 또 계획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법적 문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성 위원 2인은 개발 계획의 소요 자금 검토 및 척식회사 설립상의 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인데, 이는 재무관료들이 하는 일반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문명화 사명’의 매뉴얼을 반복한 통치원론보다 더 중요시되었던 것은 바로 인구이동의 문제였다. 이는 ‘입도(入島)’와 ‘이민’ 문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입도 문제의 경우 이는 개발 계획의 전제인 국방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섬 내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取締) 문제는 제1회 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되었을 정도로 남양군도 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에서는 ‘국제연맹 탈퇴 후 남양군도의 움직임은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어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보았다.²⁸⁾ 남양홍발의 마쓰에 위원은 국제연맹이 남양군도의 축항(築港) 문제, 도민 문제에 대해 “시의(猜疑)적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남양군도 통치에 이롭지 않은 것인데, 자신이 보기에 국제연맹의 “첩보는 현재 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허(手許)로서 주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의심되므로, … 외국인의 처분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강경한 외국인 ‘취체’ 정책을 펼치고 필요한 경우 혐의자들에 대한 입도금지-강제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간첩 용의자로 3명의 외국인을 직접 지목하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이민 문제의 경우, 조사위원회에서는 과잉인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본국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5개년간 4,500호(약 22,0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으며, 200호를 한 마을로 하여 20여 개의 이주 정착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

27) 南洋群島開發調查委員會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인 “南洋群島開發調查委員會答申”(1935)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本邦會社關係雜件 南洋拓殖株式會社』 서류철에 수록되어 있다.

28) 南洋群島開發調查委員會가 작성한 두 문서 “外國人ノ南洋群島入島ニ關スル件”(1935)과 “外國人入島取締ニ關スル件”(1935)의 내용으로, 이 두 문서는 『南洋群島開發調查會關係』 서류철에 수록되어 있다.

29) 松江春次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秘)南洋開發ノ諸問題ニ就いて”(1935). 그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그레고리. 영어·독일어·스페인어·말레이어 구사하는 남양군도 최고의 인텔리인데, “남양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그를 방문하여 밀담을 하는 것으로 보아 스파이다”라고 하였다. ②독일인 이치사이드. 수백 정보(町步)의 야자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므로 그의 ‘농장을 고가로라도 매수하여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미국인 하만. “통신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후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 현재 본국은 매년 50만 명을 송출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양군도에 매년 4-5천 명을 수용해 봤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위원들도 인정하였다. 작은 섬들로 구성된 남양군도에 세계적인 인구밀도를 자랑하던 일본 본토로부터 이민자들을 부른다는 것은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조사위원회가 남양군도로의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외(外)남양³⁰⁾’으로의 이민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간사 나까지마는 ‘외남양’ 지역은 광대한 미개척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이민자들을 받을 여지가 엄청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³¹⁾ 남태평양지역은 만주와 같은 강추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 일본농민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 무더운 미간지를 개척하는 데에는 일본 농민만큼 적합한 민족도 없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이주척식이야말로 급선무로, 필요한 재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가 본국의 농촌구제 사업비로 밀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외남양 개발에 투자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논리로 충분히 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양군도는 넓은 해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지 면적은 대단히 협소하여 사실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네덜란드령 뉴기니를 중심으로 한 외남양 지역은 아직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기회의 땅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남양군도 개발은 외남양에 대한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하며, 남양군도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였다. 마쓰에 위원도 ‘만주국처럼 기후 한랭하지도 않고, [조선이나 대만처

30) 당시 일본에서 ‘南洋群島’와 그 일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처음에는 ‘表남양’과 ‘裏남양’이 쓰이다가, 1935년 무렵부터 ‘外남양’과 ‘內남양’으로 바뀌었다(我部政明 1982a, 72). 여기서 ‘裏·內남양’은 일본 통치권에 있는 미크로네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表·外남양’은 그 인접지역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1935년의 남양군도개발계획에서도 처음에는 ‘表남양’이 사용되다가 나중에 ‘外남양’으로 굳어졌는데, 이 용어변화의 명확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가독성을 위해 ‘외남양’으로 통일하여 쓰도록 하겠다.

31) 『南洋群島開發調査會關係』에 수록되어 있는 극비 문서 “南洋群島土地開拓計劃二關スル意見”의 내용이다.

럼] 저도(低度)민족과의 경쟁이라는 장애도 없고, 또 브라질처럼 밀립격리와 같은 자연적 장애도 없다'는 점에서 외남양이야말로 일본인 이민의 최적지라고 주장하였다.³²⁾ 그는 “우리의 남방국책의 중국 목표는 남양군도를 기초단계로 하여 난영(蘭嶼)동인도[네덜란드령뉴기니]에 대한 진출을 행하여 인구 문제 및 자원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에 있다”고 하며 외남양 개발이 바로 남양군도 개발사업의 본령임을 강조하였다.³³⁾

이러한 초기 위원회의 다소 막연하고 비전문적인 논의를 남진론에 기초하여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남양군도 방책에 관한 의견”이다.³⁴⁾ 이는 3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이 의견서를 주도했던 것은 해군 남진론자 중 한 명인 후지모리(藤森清一郎) 대령³⁵⁾으로 보인다.³⁶⁾ 그래서 여기서는 해군의 남진론이 강하게 반영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의견서를 ‘후지모리 의견서’로 지칭하겠다. 후지모리 의견서의 내용은 첫째, 제국일본에서 남양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고의 필요성, 둘째, 행정조직 및 시설개선 방안, 셋째, 남양군도 개발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양군도의 중요성 인식 문제에 대해, 후지모리 의견서에서는 남양군도가 제국의 국방상의 요충지이며 남양수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남양군도가 일본이 처한 “인구 문제 해결의 키”라는 점은 아직 본국에 잘 인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양군도가 일본본국이 안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

32)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의 회의용 문서인 “裏南洋二於ける拓殖事業ノ具體的發展策二就いて”에 기재된 松江春次의 발언이다.

33) 이는 조사위원회 회의용으로 松江春次가 작성한 비밀문서“(秘)南洋開發之諸問題二就いて”(1935)에서 그가 주장한 것이다. 이 문서는 『南洋群島開發調査會關係』에 수록되어 있다.

34) 이 글에서 ‘후지모리 의견서’라 한 것은 藤森清一郎, 高山伊太郎, 坂本丹治가 1935년에 작성하여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극비 문서 “南洋群島方策二對スル意見”을 가리킨다. 이 문서는 『南洋群島開發調査會關係』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이 문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는 ‘후지모리 의견서, 페이지’의 형태로 표기한다.

35) 藤森清一郎은 해군대학 제19기로 군령부 참모를 역임한 해군 남진론의 일원이었다. 이 의견서 작성 당시에는 대령으로 현역 함장이었고, 1936년 말에는 소장으로 진급하여 사령관(司令官)이 되었다. 남진에 대한 그의 입장은 강연을 정리한 『太平洋と自由主義』(南方圈研究會 1944)를 참조할 것.

36) 다른 두 작성자인 高山伊太郎과 坂本丹治는 토목기사와 어업전문가였다.

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의 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에서도 나왔듯이, 후지모리 의견서에서도 이민지로 지목한 곳은 바로 ‘외남양’ 지역이었다. 외남양은 ‘광막하고 비옥한 토지이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남양군도를 초석으로 하여 남행(南行)이민을 감행’하기에 최적지라 하였다.³⁷⁾ 이민 문제는 후지모리 의견서 지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의견서에서는 외남양이 얼마나 이민에 적합한지를 조선·대만·만주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조선과 대만은 기후는 일본인들에게 적합하지만 이미 값싼 노동력이 가득하며 현지 총독부가 이민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일본인들이 정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라 보았다.³⁸⁾ 이는 조선과 대만으로의 농업이민정책이 1910년대에 이미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1890년대부터 식민정책학자들에 의해 ‘농업식민론’이 검토되었고 대만총독부도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대만농민들의 농업생산성에 대해 일본농민들이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조선으로의 이민도 동척에 의해 1910년부터 실시되었지만 토지투기꾼과 부재지주만을 양산한 채 막을 내렸다. 한편, 조사위원회가 열린 1935년에는 일본본국과 조선에서 만주이민정책이 한창 입안되어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정책대행기관으로 만주척식(주)와 선만척식(주)의 설립이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이 의견서에서는 만주는 소련·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완충지대로 건설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 하였다. 또 만주는 일본인의 체질·문화와 맞지 않는 곳으로, 홋카이도이민도 실패했는데 더 가혹한 기후의 만주이민이 성공할 리 없다고 하였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남양으로의 이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렇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후가 고온다습한 이남양이야말로 “남(南)의 혈(血)을 가진 야마토민족”에게 필요한 땅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행이민’보다는 ‘남행이민’이 일본제국 이민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민자들로 육지가 채워지고 원양어선단이

37) 후지모리 의견서, p. 12.

38) 후지모리 의견서, p. 14.

39) 후지모리 의견서, pp. 13-14.

활기를 띠고 주요항구가 축항된다면 남양군도를 중심으로 한 해역은 서태평양의 일본 ‘내해(內海)’가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하였다.⁴⁰⁾

둘째, 남양군도 통치 조직의 개편과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교통·통신망의 확대, 교육·의료시설의 완비, 금융망의 구축, 조사기구의 설치 등 식민 통치에 요구되는 일반 시설들을 언급한 후, 통치 조직의 확대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후지모리 의견서는 남양개발이라는 국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내(島內) 행정기관을 개정하고 수뇌부의 위치를 높여 행정기구를 강화’하여, ‘조선·대만·카라후토처럼 경제가 앞서 가고 행정기관이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선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남양군도에 총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남양총독(南洋總督)’을 설치하여 국방기지 건설과 경제개발을 ‘관헌(官憲)’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⁴¹⁾

통치 조직 문제와 관련하여 후지모리 의견서가 특별히 언급하는 또 하나의 사항은 외교기구의 신설·확대이다. 남양군도 개발계획이 외남양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 이 지역과의 분쟁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일본의 재외공관은 3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심지어 만주국은 일본과 “소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독립국으로 외무관헌 본래의 임무와는 크게 성격을 달리함에도” 남양지역의 10배의 외교관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장차 네덜란드와의 분류에 대비하여 외교기구를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²⁾ 그런데 이 의견서에서는 남태평양의 주요 세력인 호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당시 호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때와는 달리 상대적 안정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관계는 일본의 국제주의 외교 노선과 그에 수반한 워싱턴체제의 준수, 그리고 활발한 무역거래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일본과 호주는 강화조약에서 적도 이북과 이남의 섬들을 각각 나눠 가졌는데, 호주령에 대해 일본은 스스로 철저히 경제적인 것으로만 행동을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호주는 일본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

40) 후지모리 의견서, pp. 15-17.

41) 후지모리 의견서, p. 43.

42) 후지모리 의견서, p. 30.

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만주사변 발발 이후 호주는 일본의 만주영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일본이 북진에 성공하여 자신들이 있는 남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호주는 만약 만주국이 실패한다면 일본은 필히 태평양으로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역사가 말해주는 대로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다(後藤乾一 2010, 134-136).

세 번째 사항인 “남양군도 개발의 방안”에서 의견서 제출자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남양척식회사의 창설 문제였다. 후지모리 의견서의 결론장인 ‘남양군도개발처리방책’에서는 개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남양총독부의 신설과 국책회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서는 ‘국책회사에 대한 일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국책회사의 조직 구조, 사업 내용이 구도를 그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는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의 첫 번째 안(案)에 해당하므로, 다음 장에서 회사 설립 문제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IV.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 계획과 실현

1. 국책척식기관 설립 계획의 원안

후지모리 대령 등이 작성한 “남양군도방책에 관한 의견”—이 글에서 “후지모리 의견서”라 한 이 문서는 남양척식회사 설립 계획의 원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 외부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리된 정식 계획안은 아니지만, 식민지 개발을 위한 국책회사의 상(像)과 그 설립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신국책회사의 설립은 무엇보다 남양홍발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양홍발은 남양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제당산업, 농업이민, 교통운수, 수출판매 등 남양군도의 산업에 관련한 종합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수익성도 높은 준(準)국책회사였지만, 남양군도 개발 계획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이 회사는 금융공급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다. 후지모리 의견서도 그렇고 마쓰에 사장도 지적하듯이, 당시 남양군도에는 금융기관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영세상인들이 만든 소규모 신용조합 정도만 있을 뿐이었다. 대기업인 남양홍발은 남양청과 동척의 지원으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양홍발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남양홍발은 그 사업의 성격에서나 정부와의 관계에서나 국책회사에 준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수익성의 최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었다. 남양홍발은 남양군도 산업의 거의 전부였지만, 이 회사가 다른 기관·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무한정으로 융통하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에서 개발 계획을 입안하면서 척식회사의 설립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즉 척식회사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척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공급’이었으므로 금융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남양군도에 척식회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둘째, 남양홍발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이 갖는 위험성을 들 수 있다. 남양홍발은 창립 이후 큰 문제가 없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었지만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2-3년간은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이 곤란이 부도나 구제금융을 걱정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약간의 수익 감소와 차입금의 증가 정도에 그쳤지만, 민간기업은 그 성격상 도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는 없었다. 후지모리 의견서에서도 남양홍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불황이 왔을 때 남양군도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⁴³⁾ 남양청의 재정에서 남양홍발이 납부하는 ‘출항세’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 남양홍발이 극도의 경영부진을 겪거나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남양청의 통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본국정부에서 ‘남양군도특별회계’ 편성 예산을 크게 늘려주어야만 하고, 이는 본국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셈이었다.

요약하면, “내지를 위협하지 않는 남양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

43) 후지모리 의견서, p. 37.

업보다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대(大)자본을 갖춘 국책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⁴⁴⁾ 남양홍발은 사업 내용상 분명 국책회사였지만, 그 조직 구성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법인으로, 남양군도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국가화된 형태의 기업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후지모리 의견서에서는 남양군도와 남양홍발의 관계를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도 하면서 강력한 기반을 갖춘 국책회사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후지모리 의견서의 주장은 ‘남양홍발 해소론’으로까지 나아간다. 의견서의 최종장인 “국책회사에 대한 일고찰”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단지 신설 회사의 조직 구성을 제시해 둔 것인데, 이는 조사위원회에서 생각하던 척식회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 그 조직 구성의 차원도 다른 것이었다. 의견서가 제시한 것은 국가금융지주회사로 ‘남방산업주식회사(南方産業株式會社)’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반관반민의 특수회사로 그 사업 목적은 타회사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에 있었다. 자본금은 무려 1억 엔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최대의 척식회사인 동척의 당시 자본금보다 큰 것이었고 이에 비견할 회사는 바로 만주의 만철뿐이었다.

이 남방산업(주)는 모회사(母會社)로서 각 자회사(子會社)에 대한 감독·통제권을 행사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더 나아가 자회사 상품의 가격과 판매를 통제하고, 대외교섭과 조사연구까지, 그리고 판매조합과 ‘위안기관’도 경영하는 것까지를 업무내용으로 하였다. 남방산업의 관할하에 놓이는 자회사에는 남양제당, 남양척식, 남양광업, 남양석유, 남양우선 등 남양군도 산업개발의 주요 기업군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여기서 남양제당은 바로 남양홍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의견서는 남양홍발의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양척식은 철저히 이민회사로만 국한되었다.

즉 후지모리 의견서는 동척에 버금가는 새로운 식민지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투자금융을 담당하면서 각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모회사인 남방산업은 자회사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고 또 자회사의 임원도 모회사로부터 파견함으로써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또 사업에 관해서는 “남양방면”에서 유력한 사업은 전부 회사에서 종합하며, 작은 사업들은 조합이

44) 후지모리 의견서, pp. 37-38.

회사와 계약을 맺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양총독이 이 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총독은 ‘참여회의’를 통제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즉 후지모리 의견서의 ‘남방산업주식회사’ 조직 구성은 바로 식민지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총독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허식민회사, 차타드컴퍼니(chartered company)의 설립을 의미하였다. 일본해군은 남진을 위해 ‘바다의 만철’이 필요했고, 후지모리 의견서의 남방산업주식회사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2. 남양척식주식회사설립위원회의 심의: 쟁점을 중심으로

후지모리 의견서는 남양군도개발계획에 대한 일본해군의 비공식 의견이면서 동시에 남방산업주식회사 설립 구상안의 일부였다. 이 의견서에 대해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당시 척무성이나 남양청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대 계획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조사위원회는 그 최종 보고서인 “남양군도개발조사위원회답신”(1935년 10월)에서 척식자금의 공급기관으로서 남양척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정도로 하여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 “답신”은 남양척식회사의 조직·자본·사업의 개요를 밝혀 두었는데, ①조직의 경우, 칙령에 근거한 특수회사로 설립하며, ②자본금은 남양척직영광산의 현물출자와 남양군도 관련 기업체·개인의 출자, 그리고 일반공모로 조성되며, ③회사의 사업은 남양군도 및 외(外)남양에 대한 척식사업 [인광업(燐鑛業), 수산업, 해운업 등] 및 이에 수반되는 이주민의 조성·토지의 취득, 그리고 척식자금의 공급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본 골격은 이후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要綱”(1935년 11월), “南洋拓殖株式會社令(勅令)案”(1936년 6월) 등 회사 설립을 위해 수립된 계획안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최종 법령인 “南洋拓殖株式會社令”(칙령 제228호, 1936년 7월)에서도 거의

45) 1941년에 남양척식회사와 대만척식회사를 통합하여 대령국책회사로 ‘남방척식주식회사(南方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군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대만총독부가 제동을 걸어 지연되었다.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인 “답신”이 나온 지 약 1개월 후에 남양척식회사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밝힌 “남양척식주식회사설립요강”⁴⁶⁾이 마련되었다. 위의 “답신”의 조직, 자본, 사업 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 이 “요강”이다. 자본금은 2천만 엔 40만 주로 하였고, 자본구성에 대해서는 먼저 남양청이 직영광산을 평가액 1천만 엔으로 현물 출자하여 20만 주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며, 민간출자는 동척과 남양홍발 등 남양척식사업에 관련된 기업체에 적절히 할당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양군도가 금융망이 대단히 불비하므로 도내는 물론이고 외남양에 대해서도 남양척식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회사의 운영자금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납입자본금의 5배까지 기채(起債)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⁷⁾ 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정부에 있는데 1차는 남양청장관이며 2차는 남양청장관을 경유하여 척무대신이 갖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척무대신을 위원장으로 한 ‘남양척식주식회사설립위원회’에서는 이 요강을 토대로 회사 설립에 관한 법령과 예상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된 문제는 (가)동척과의 관계 문제, (나)자금 조달의 문제, (다)사업 권역의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동척과의 관계는 1936년 신설된 척식회사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당시에도 이 문제는 설립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동척의 기본적인 경영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로세(2003)가 지적했듯이, 동척은 1918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한 만주 토지매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920년대 중엽부터 극도의 경영부진에 빠졌다. 1926년에는 사실상 대(對) 만주 사업을 중단·유보하고 원 사업구역인 조선으로 돌아와 산미증식갱신 계획에 투자를 하였고, 그 외에는 남방지역의 자원 산업에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동척은 1926년부터 1936년의 근 10년 동안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46) 이는 拓務省殖産局이 1935년 11월에 작성한 것으로 남양척식회사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極秘]南洋拓殖株式會社ノ設立ニ關スル件”의 부속문서).

47) 이는 곧바로 납입자본금의 3배까지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경영방침하에 대(對)만주사업의 실패로 입은 손실을 차분히 만회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⁸⁾ 예를 들어, 동척은 만철과 공동으로 설립한 동아권업회사의 지분을 1928년 전부 만철에 매각하여 만주토지매수 사업에서 손을 떼기도 하였다(조정우 2011, 21-23). 1936년 조선총독부가 만주이민사업을 위해 선만척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일본 제국의회에서는 ‘동척이 있는데 왜 동척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회사를 병설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였다.⁴⁹⁾ 이는 동척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이민사업을 다시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동척은 조선총독부의 이민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총독부의 종용에 의해 마지못해 선만척식회사 출자에 응했을 따름이었다.

선만척식회사에 대한 동척의 반응이 일본 내부에도 알려졌는지, 남양척식회사설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회사 설립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그 설립의 실무를 담당할 척무성 식산국은 동척을 자본금 출자기관의 하나로 설정을 해두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이 동척의 종래 실적과 현재의 소극적 태도로 봤을 때 남양척식회사에 과연 출자를 할지 의문이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⁵⁰⁾ 척무성 식산국장은 특수회사가 다른 특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예로 동척의 선만척식회사 투자를 거론하면서 이는 전례가 있는 일이며, 또 동척이 최근 업적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남양홍발의 대주주로 남양군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자에 응할 것이라 답변하였다.⁵¹⁾ 실제 동척은 남양척식회사 출자에 응하였지만 1만주 50만 엔으로 하여 대규모 출자는 하지 않았다.

(나) 자본금과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남양척식회사의 주주구성 내역을 통해 살펴보겠다. <표 1>에서 ‘설립위원회의 할당 예정 내역’

48)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동척은 전력·광산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사채발행한도를 대폭 증액하였다.

49) 『朝鮮公論』을 창간했던 牧山耕藏가 제69회 제국의회 중의원 심의에서 질의한 내용이다(衆議院 1936).

50) 해군측에서도 동척은 ‘대륙방면의 사업에 전념해야 하므로’ 동척의 출자에 강경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南拓會 1982, 37-38).

51)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의 회의록 중 하나인 “南洋拓殖株式會社特別委員會議事要錄”(1936)에 기록되어 있는 설립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이다. 이 회의록은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關係書類』(上)에 수록되어 있다.

은 설립위원회 회의에서 계획된 출자자 및 출자액이고, ‘설립 직후 주주 내역’은 실제 출자 내역이다.

<표 1> 남양척식주식회사 주주 구성 내역

구분	설립위원회의 할당 예정 내역		설립 직후 주주 내역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정부지분	남양척	200,000	남양척	210,920
	설립위원회유보금	10,920		
국책회사	日本郵船	10,000	日本郵船	10,000
	東拓	10,000	東拓	10,000
남양군도 관계회사	南洋興發	48,080	南洋興發	48,080
	南洋石油	3,000	南洋石油	3,000
	南洋電力	3,000	南洋電力	3,000
	南洋貿易	2,000	南洋貿易	2,000
재벌	三井物産	20,000	三井物産	20,000
	三井鑛山	10,000	三井鑛山	10,000
	三菱合資	12,000	三菱商社	12,000
	住友合資	6,000	住友合資	6,000
	大倉組	10,000	大倉組	10,000
	淺野	5,000	紫雲商社	5,000
일반	공모주	50,000	공모주	50,000
합계		400,000		400,000

*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1936); 南拓會(1982)

계획안대로 남양척은 직영광산을 현물출자하여 약 50%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것이므로 회사의 자금적 기초를 강화하는, 다시 말해 담보로 잡을 수는 있는 것이었지만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 실제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금은 민간회사들로부터 납입되었는데, 특히 남양흥발은 약 4만 8천

주를 인수하여 남양청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또 남양석유, 남양전력, 남양무역도 남양홍발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 실제 남양홍발의 지분은 약 5만 6천 주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남양홍발의 지배 대주주는 그 주식을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동척이었기 때문에 결국 동척-남양홍발계 지분은 6만 6천 주나 되었다.

그렇지만 동척-남양홍발계가 남양척식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임에도 법적으로 남양척식의 최대 주주는 정부(남양청)였을 뿐만 아니라, 또 회사의 경영의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남양청과 척무성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그저 요식적인 것일 뿐이었다. 대주주들 역시 정치적 거래에 따라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의사도 없었다. 남양청의 후원 없이는 설립도 존속도 불가능한 남양홍발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리 없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양홍발의 사장 마쓰에가 조사위원회와 설립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꺼이 거액을 출자한 것은, 남양척식회사의 설립은 남양홍발에도 크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양척식회사는 무엇보다 자금을 공급하는 회사로, 마쓰에와 같은 기업인에게는 추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이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쓰이·미쓰비시 등이 출자에 응한 것도 출자를 통한 이권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맥락은 동일하였다. 특히 남양군도와 외남양지역은 인광을 중심으로 한 사업성 있는 광산과 수익성 높은 제당업이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남양척식회사의 주주 구성에서 특기할 것은 국책회사임에도 일반공모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의 선만척식회사도 애초에는 주식시장에의 상장을 하여 민간자본을 모집하려 하였지만 상장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이는 선만척식회사의 조선인 만주이민사업이 총독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조정우 2014, 219). 이에 반해 남양척식회사는 인광(麟鑛) 채굴, 수익성 높은 남양홍발의 존재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상장에 성공하였다.⁵²⁾ 남양

52) 당시 일본의 주식시장은 주식거래를 통한 차익 보다는 배당 수익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배당률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그간 남양홍발은 적어도 9% 이상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양척식회

척식회사 주식은 당시 국채금리(3-4%) 보다 높은 6%의 배당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양홍발 등 투자기업의 영업성적에 따라 9%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공모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남양척식 주식 신청수는 예상의 15배에 이르렀다(南拓會 1982, 37). 한편 대만척식회사도 일반공모에 크게 성공하였는데, 남양척식회사와 똑같이 대만척식회사에도 대만총독부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확실한 담보물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만제당·대일본제당 등 수익성 높은 제당업체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이 남진형 척식회사인 남양척식·대만척식과 북진형 척식회사인 선만척식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선만척식은 정부의 현물출자도 없었고, 남양홍발이나 대만제당과 같은 수익성 높은 현지 사업체의 출자도 받지 못하였다. 도리어 선만척식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동아권업을 인수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전액을 소진해 버렸다. 남양군도와 대만의 ‘준국책회사→국책회사’의 상호이익 구도가 조선에서는 성립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 남양척식회사의 설립에서 논의가 되었던 또 하나의 사항은 바로 같은 시기에 설립 준비를 하고 있던 대만척식회사와의 관계 문제였다. 남양척식이 남양군도와 외남양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만척식회사도 ‘대만본도(臺灣本島)와 도외(島外)’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외남양’과 ‘도외’가 겹친다는 데 있었다. 과연 남양의 ‘외(外)’가 어디까지이며, 대만도의 ‘외(外)’가 어디까지인지는 양쪽 모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경계를 긋지 못하였다. 남양척식회사 설립위원회에서는 양 측의 ‘외(外)’가 서로 겹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척무성 등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설립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장차의 문제’이므로 추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 하기도 하면서도 남양군도 남쪽 지역, 즉 ‘네덜란드령 뉴기니’ 등은 확실히 외남양에 속하는 곳으로 남양척식회사의 사업구역이라고 규정하였다.⁵³⁾

사령”은 민간주주들에 대해 최저 6%의 배당을 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6% 배당을 보장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남양홍발이 수익이 증대한다면 추가적인 배당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

53) 설립위원회 회의록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議事錄”(1936. 7. 29.)의 기타지마

특정 국가의 국책회사가 자국 영토가 아닌 지역을 사업 권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제분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만주의 준국책회사 동아권업은 만주 내에서는 ‘동아권업주식회사’라는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라는 중국식 한자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양국 간 한자어 용법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동아권업 측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한자인 ‘회사(會社)’ 대신 중국식 한자인 ‘공사(公司)’를 써서 일본계 회사임을 감추려 한 것이었다.⁵⁴⁾ 남양군도에 있어서도 네덜란드는 줄곧 일본의 활동을 의심하고 있었고, 자국령 뉴기니에서 일본인 개인의 활동까지는 크게 제약하지 않았지만 준국책회사인 남양홍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만척식회사의 경우에도 ‘도외(島外)’가 지시하는 구역 중에는 사실 중국의 화남 지방과 특히 하이난도(海南島)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남양척식과 대만척식의 사업 권역의 설정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양군도와 대만 간의 접촉 부분의 조정문제가 아니라, 이 ‘외(外)’가 모두 일본제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을 가리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남양’과 ‘도외’의 ‘외’는 대외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었다.

V. 결론: 식민지 개발과 군사주의

1936년 11월 제1회 주주총회에서 회사 설립을 가결한 후 도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마침내 남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본사는 남양군도 팔라우였고 도쿄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⁵⁵⁾ 남양척식회사 설립의

위원의 발언 내용이다.

54) 그리고 사장(社長)이라는 명칭도 중국인들의 감각에서는 ‘두목’과 같은 어감이었기 때문에 공익단체의 장을 뜻하는 ‘총재(總裁)’로 굳이 바꾸었을 정도였다. 이는 선만척식회사 설립 시에도 제국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회사 측은 서둘러 회사대표 직명을 사장에서 총재로 바꾸었다.

55) 일본 상법에서는 회사의 설립등기는 본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두었는데, 남양척식회사는 본사가 있는 팔라우가 아니라 도쿄에서 설립등기를 하였다. 설립총회에서 兒玉척무대신은 남양군도에 등기소가 있는지 묻기도 하였다. 남양군도에도 등기소는 있었지만 회사는 일본에 있는 주주들의 편의를

계기가 되었던 남양군도 개발 계획은 국방강화와 외남양 ‘진출’을 두 축으로 하였다. 여기서 남양척식회사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외남양’ 지역은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계 기업이 그것도 국책회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 대신 남양척식회사가 취한 방식은 외남양을 영업지로 하던 민간 일본 기업·상인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투자·융자해 주는 것이었다.⁵⁶⁾ 이 지극히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외남양에서 일본의 경제력을 확대하면서도 국책회사인 남양척식의 존재는 감출 수 있었다.⁵⁷⁾ 척식회사의 기본 목적인 ‘척식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남양척식은 외국 영토인 외남양에 일본의 세력을 ‘부식(扶植)’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부자금의 국적을 ‘세탁’하여 민간 회사기업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경제적 제휴’를 명목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며, 또 일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해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 회사·기업들로부터 보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해군은 남양홍발에 의뢰하여 남양군도 티니안섬에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하도록 했는데, 이 농장은 사탕수수를 베어내면 즉시 비행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이는 사실 비행장이었는데, 국제연맹 규약상 위임통치령에는 일체의 군사시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군은 법적 민간기업인 남양홍발을 앞세워 군사시설 설치를 감추었던 것이다. 남양척식회사와 남양홍발은 국책회사가 갖는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두 회사는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언제나 군사적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평시-전시 전환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 즉 이 회사들은 군사적인 것을 ‘특수사업’이라는 이름(今泉裕

위해 도쿄에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밝혔다(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1936)의 “南洋拓殖株式會社委員會議事錄”에 수록된 설립총회 기록).

56) 남양척식회사 설립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인 “南洋拓殖株式會社特別委員會議事要錄”(1936년 8월 24일)에는 남양척식회사의 목적이 투융자를 통해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 회의록은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關係書類』(上)에 수록되어 있다).

57) 조사위원회가 회의용으로 작성한 의견서인 “(極秘)南洋群島土地開拓計劃二關スル意見”(1935)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美子 2005, 237)으로 시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에 있어서도 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었던 것이다.

남양척식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선만척식회사도 조선인 만주이민의 지원이라는 목적을 내걸었지만, 이 회사가 사업 첫 해에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은 만주 각지에 산재한 조선인 농민들을 관동군이 지정한 구역에 집결 시키는 것이었다. 관동군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또 농민들이 항일 게릴라의 배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제지역’에 있는 조선 농민들을 지정구역으로 집결시키고자 하였다. 선만척식회사가 이민을 지도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이민사업은 재만조선인들을 군의 요청에 따라 소개·집결(疏開·集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식민지 국책회사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일본항복 후 모두 연합국총사령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 해체되었다.⁵⁸⁾ 그런데 남양홍발도 법적 민간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척, 만철, 조선은행 등의 식민지 국책회사들과 함께 해체되었다. 남양홍발 전(前) 직원들이 전후에 발간한 『남흥사(南興史)』에서는 민간 제당업체인 남양홍발을 왜 연합국이 해체시켜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지만(佐伯康子 1992b, 79-8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양홍발은 준국책회사 중에서 가장 국책회사에 가까운 운영방식과 사업내용을 가진 회사였고, 마쓰에 사장 개인은 남양군도 개발조사위원회와 남양척식회사설립위원회에 들어가 스파이까지 지목해 가며 활동하였다. 그의 남양홍발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로 건설한 티니안 농장-비행장은 전쟁 중에 미군이 점령·점수하였다. 1945년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B29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를 향해 이륙한 곳이 바로 이 티니안 비행장이었다.

58) 선만척식회사는 1941년 만주척식공사에 통합되어 해산하였다.

| 참고문헌 |

- 권명아 (2005). “태평양 전쟁기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상허학보』. 제14집, pp. 327-361.
- 김도형 (2006). “중부 태평양 팔라우 군도 한인의 강제동원과 귀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6집, pp. 1-22.
- 김명환 (2008). “1943-1944년 팔라우(Palau)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朝鮮人勞務者關係綴』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4호, pp. 75-120.
- _____ (2009).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실태(1914-1938).”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6호, pp. 5-50.
- _____ (2010). “일제말기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인 동원실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8호, pp. 197-234.
- 남경희 (2005). “1930-40년대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지역 한인의 이주와 강제연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2002). “공문서의 미시적 구조 인식으로 본 남양농업이민(1930-40).”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호, pp. 69-112.
- _____ (2005). “일제 말기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4집, pp. 169-228.
- _____ (2006).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과 ‘남양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6집, pp. 199-234.
- 조정우 (2011). “만주사변 전후 ‘척식’사업기구의 변화: 동아권업(주)의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92호, pp. 5-37.
- _____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의 설립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103호, pp. 193-230.
- 도미야마 이치로 (2002). 『전장의 기억』. 임성모 역. 이산.
- _____ (2015). 『유착의 사상』. 심정명 역. 글항아리.
- Peattie, Mark (1984). “The Nan'yō: Japan in the South Pacific, 1885-1945.” R. Myers & M. Peattie (ed.).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72-210.
- _____ (1988). *Nan'yō: the rise and fall of the Japanese in Micronesia, 1885-194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uus, Peter (1992). “植民地なき帝國主義—「大東亞共榮圈」の構想—.” 『思想』. No. 184. 東京: 岩波書店, pp. 105-121.
- Peattie, Mark (1996). 『植民地: 帝國50年の興亡』. 淺野豊美 譯. 東京: 讀賣新聞社.

- 江夏由樹 (2005). “東亞勸業株式會社の歴史からみた近代中國東北地域.” 江夏由樹外編, 『近代中國東北地域史研究の新視覚』. 東京: 山川出版社, pp. 43-69.
- 高木茂樹 (2008). “南洋興發の財政狀況と松江春次の南進論.” 『アジア經濟』. 第49号, pp. 26-46.
- 久保文克 (1997). 『植民地企業經營史論: 「準國策會社」の實証的研究』.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今泉裕美子 (1992). “南洋興發(株)の沖繩縣人政策に關する覺書—導入初期の方針を中心として.” 『沖繩文化研究』. 第一九号, pp. 131-177.
- _____ (1994). “國際聯盟での審査にみる南洋群島現地住民政策.” 『歴史學研究』. 第六六五号, pp. 26-40.
- _____ (2005). “南洋興發株式會社・南洋拓殖株式會社—南進政策を支えた二大企業.” 印東道子編, 『マイクロネシアを知るための58章』. 東京: 明石書店, pp. 232-237.
- 南拓會 (1982). 『南拓誌』. 東京: 南拓會.
- 矢野暢 (1975). 『南進の系譜』. 東京: 中央公論社.
- 我部政明 (1982a). “日本のマイクロネシア占領と「南進」—軍政期(一九一四年から一九二二年)を中心として—.” (一). 『慶應大學法學研究』. 第五十五卷. 第七号, pp. 70-89.
- _____ (1982b). “日本のマイクロネシア占領と「南進」—軍政期(一九一四年から一九二二年)を中心として—.” (二). 『慶應大學法學研究』. 第五十五卷. 第八号, pp. 67-87.
- 佐伯康子 (1992a). “海軍の南進と南洋興發(1920年~1936年)—南洋群島委任統治から「國策の基準」迄.” 『慶應大學法學研究』. 65卷. 2号, pp. 229-237.
- _____ (1992b). “砂糖王 松江春次論—南洋興發の發展と崩壊.” 『名古屋明德短期大學紀要』. 第三号, pp. 67-81.
- 淺田喬二 (1973).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東京: 未來社.
- _____ (1989). 『増補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東京: 御茶の水書房.
- 河原林直人 (2011). “熱帶産業調査會開催過程に觀る台湾の南進構想と現實—諸官廳の錯綜する利害と認識.” 『名古屋大學論集 社會科學篇』. 第47卷. 第4号, pp. 111-133.
- 後藤乾一 (2010). 『近代日本と東南アジア—南進の衝撃と遺産』. 東京: 岩波書店.
- 黒瀨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南洋群島開發調査委員會 (1935). 『南洋群島開發調査會關係』.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아시아歷史資料センター 제공문서)

-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 (1936). 『南洋拓殖株式會社設立關係書類』. (上). (國立公文書館 소장)
- 外務省 (1936). 『本邦會社關係雜件 南洋拓殖株式會社』. (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아시아歷史資料센터 제공문서)
- 衆議院, (1936). 『第69回帝國議會衆議院速記錄』. 東京: 衆議院事務局. (日本國會圖書館 國會會議錄 검색시스템)
- 拓務省 (1934). “(秘)南洋群島開發調查委員會設置ノ件.” (國立公文書館 소장, 아시아歷史資料센터 제공문서)

| 논문투고일 : 2015년 08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8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9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3 (2015)

**Colonial Development and Militarism:
South Pacific Development Planning of Imperial
Japan and *Nanyo Takushoku* Corporation**

Jungwoo Cho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Hallym Univ.)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Nanyo Takushoku* Corporation(NTC). NTC was the Japanese state company for colonial development in Nanyo(南洋群島). Nanyo has been different feature from the other colonies in Empire Japan. Most of all, that was the mandate of the League of Nations. This is important point at comprehending the character of the Japanese rule in Nanyo.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NTC was possible just after Japan's withdrawal from the League of Nations in 1933. This development plan for Nanyo was directly stimulated by founding of the Manchukuo and construction of Japan-Manchu bloc economy.

- Key words: *Nansin*,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Chartered Company, Development company